

## 택배사업자 -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택배사(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와 ○○영업점(이하, “영업점”이라 한다)은 택배 운송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간 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계약의 주요내용)**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_____개월)
위탁지역		
위탁업무		
담보 금액·종류		
수수료 지급기준		별도 첨부

② 제1항의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 및 관련 비용 부담 기준 등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사전 협의하여 이 계약 또는 제20조에 따른 부속합의로 정한다.

**제4조(담보의 제공)** ① 택배사업자는 영업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영업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는 영업점의 \_\_\_\_\_에 연동한 일금 \_\_\_\_\_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영업점은 택배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현금,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의 담보를 택배사업자에 제공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③ 영업점이 택배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택배사업자 \_\_\_\_\_%, 영업점 \_\_\_\_\_%로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적 담보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인적 담보 및 다른 형태의 담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⑤ 영업점의 물량 증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택배사업자는 영업점과 사전에 담보 조정 금액, 방식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서면(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계약 또는 부속합의에서 같다)으로 협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 위탁지역)** ① 택배사업자는 예상 물량 등 시장 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점과 협의를 거쳐 담당 위탁지역을 설정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영업점에게 담당 위탁 지역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택배사업자는 담당 위탁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영업점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담당 위탁지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지급 및 정산)** ① 택배사업자는 영업점과 약정한 수수료 지급 기준(별첨)에 따라 영업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음달 \_\_\_\_ 일 까지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지급한다.

③ 영업점이 수납해야 할 금원이 발생할 때에는 지정 수납일로부터 \_\_\_\_ 영업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하여야 한다.

④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수료, 상대방에 대한 채권 등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⑤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수수료 등 정산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교부하고 영업점이 해당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영업점은 택배사업자의 수수료 등 정산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는 이의를 제기 받은 날로부터 \_\_\_\_ 영업일 이내에 그에 대한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 확보)** ① 택배사업자는 원활한 택배 배송업무 수행,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업점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실, 차량, 전산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영업점이 택배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운영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영업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지원)** ①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이 원활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전산 장비 또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또는 대여할 물품·장비의 내역,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 멸실, 훼손, 운송지연 등(이하 “화물사고”라고 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 중 일방이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택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주체를 판단하거나 손해배상책임 부담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하 “사고처리 지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영업점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사고처리 지침에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택배사업자는 사고처리 지침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고처리 지침을 수정·변경하려는 때에는 영업점(혹은 영업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⑥ 화물사고에 대하여 택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부담 비율을 판정하는 경우 영업점에게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영업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_\_\_\_\_ 영업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수준 평가)** ①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 \_\_\_\_\_ 회 영업점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수준 평가는 영업점의 집화, 배송, 반품 등 서비스 품질과 고객불만 처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택배사업자는 사전에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기준을 영업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택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하·배송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담당 구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거래 조건을 영업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영업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 물품 ·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상호 합의하에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영업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5. 서비스 품질의 유지 · 개선, 관계 법령, 정부의 정책 또는 지침 준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영업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영업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
7. 상법상 이자 이상으로 자연이자를 설정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8.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또는 수수료 정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행위
9. 부당하게 영업점에게 영업실적 등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이 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휴일을 제공하여 종사자의 쉴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점의 준수사항)** ① 영업점은 택배사업자가 제시하는 업무 처리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영업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자료제출 요청에 협조 등)하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21. 6. 22)」를 성실히 이행한다.  
③ 영업점은 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휴일을 제공하여 종사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영업점은 영업점 운영 중 알게 된 택배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고객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야 하며, 고객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영업 양도)** ① 영업점은 택배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영업 양수인은 종전 영업점의 택배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5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과 같다.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_\_\_\_ 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이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사항의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위해 노력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

3.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화물자동차 운송 및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 등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협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 이 외에 사유로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중대 명백한 경우

④ 택배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물량의 현저한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계약 종료 시 조치)** ①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영업점은 지체 없이 택배사업자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택배사업자가 제공한 자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 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택배사업자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_\_\_\_ 일 이내에 영업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에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으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권 설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라도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 해결)**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법원에 소송(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소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 곳으로 한다.

**제20조(부속 합의)**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속합의서는 이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등)**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의 내용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 수수료 지급기준

20 년 월 일

택배사업자 상호 :  
사업자(법인)번호 :  
주소 :  
대표자 : ①

영업점 상호 :  
사업자(법인)번호 :  
주소 :  
대표자 : ①

[별첨] 수수료 지급 기준 (예시)

기준 급지 : \_\_\_\_\_

집화 수수료

택배운임 단가	수수료 액수
(예시) 2,200원 이상 ~ 2,500원 미만	건당 _____ 원 또는 건당 운임의 ____ %
...	

배송 수수료

택배운임 단가	수수료 액수
(예시) 2,200원 이상 ~ 2,500원 미만	건당 _____ 원 또는 건당 운임의 ____ %
...	